



발행일 2020년 09월 22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제163호

NARS

현안분석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원시연*

- 01 I. 서론
- 03 II.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현황
- 08 III.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 10 IV.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입법화 동향
- 13 V. 나가며

요약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연금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의 비경제활동인구와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등 적용의 사각지대 규모가 큼
 - 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볼 때, 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정기적인 노후소득 확보 가능성이 낮아,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큼
 -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적 방안
 - 연금제도의 적용대상(특히 사업장가입자)의 확대
 - 출산·군복무·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
 -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 제20대와 제21대국회에서도 가입자 확대, 가입기간 추가산입, 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입법화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옴
-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를 함께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
 02-6788-4720
 sywon@assembly.go.kr

I. 서론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후보장의 핵심 축인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대규모 실직, 영세자영업자들의 파산, 중산층의 빈곤계층으로의 전락 등 암울한 시나리오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국민연금제도는 본인의 기여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¹⁾을 사망 시까지 받게 됨
 - 더불어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그리고 장애연금 수급권자²⁾ 등이 사망하면 그 유족은 유족연금³⁾을 받을 수 있음

-
- 1)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2)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②~③ (중략)
-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이하 생략)

- 국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금급여가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사망 시까지 정기적으로 수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가입은 기본적인 노후준비의 시작이라 할 것임
- 그런데 수급자 기준에서 볼 때 현행 국민연금은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 모두 상당히 큰 상황⁴⁾
 -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통상적으로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로 구분해볼 때, 적용의 사각지대는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하며, 급여의 사각지대는 가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짧아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와 수급권을 획득했다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수급기간이 짧은 경우를 말함⁵⁾
 - 2019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42.5%로⁶⁾ 다른 직역연금 수급률을 함께 고려하더라도⁷⁾ 적용의 사각지대가 51.9%로 상당히 큼
 - 급여 수준을 보면, 평균 수급액 기준 노령연금은 52만 7,075원, 장애연금은 45만 5,731원, 유족연금은 28만 4,892원으로,⁸⁾ 해당 수급액은 OECD가 정한 소득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⁹⁾
- 문제는 국민연금의 가입자(만 18세~59세)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규모의 비경제활동인구와 납부예외자¹⁰⁾ 및 장기체납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 규모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는 것임¹¹⁾
 - 2019년 12월 말 기준, 만18세~59세 인구 중 약 1,305만 명이 적용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으며, 그에 따라 급여의 사각지대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고,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큰 부담이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큼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시급히 모색하고, 최대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추진 되어 왔던 제도적 방안과 최근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4) 국민연금은 지역가입 및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과 탈퇴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고, 보험료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도의 사각지대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5) 류재린,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와 지역가입자의 관리강화 및 지원 필요성」, 『연금포럼』 봄호 Vol.77, 국민연금연구원, 2020, p. 32.

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검색일:2020.09.13.)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802만 6,915명이고,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2019.12월 말 기준)」(<https://www.nps.or.kr>)(검색일:2020.09.13.)에 의하면, 동일 연령집단 중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341만 4,256명임

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률을 모두 고려한, 65세 이상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2019년도 기준 48.1%임. 국회예산정책처, 「2020 경제·재정수첩」, 2020.

8)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2019.12월 말 기준)」, p.23. (<https://www.nps.or.kr>)(검색일:2020.09.13.)

9) 다만, 국민연금 재정을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함

10) 납부예외자란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함. 주요 사유로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있음

11) 가입자 기준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규모는 II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함

II.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현황

1. 사각지대 규모

- 국민연금 가입자 연령군(18세~59세) 인구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약 3,213만 명이며, 그 중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인구수는 약 1,305만 명에 이룸
 -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871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였으나 다양한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가 약 328만 명, 연금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가 약 106만 명임
 - 2019년 말 기준으로, 18세~59세 인구 10명 중 약 4명이 적용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임. 다만, 향후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기도 하고, 납부예외자나 장기체납자가 납부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존재함
- 보험료 납부자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급개시연령까지 수급요건(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급액이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사각지대'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전체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적용의 사각지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음

〈그림 1〉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2019년 12월 말)

18~59세 총인구 (3,213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871만 명)	경제활동인구 (2,317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 (2,172만 명)				
	납부예외자 (328만 명)	소득신고자 (1,844만 명)			특수직역 연금 (170만 명)
		장기체납자 (106만 명)	보험료납부자(1,738만 명)		
소계(1,305만 명)			소계(1,908만 명)		

※ 주: 공적연금 가입자 규모(2,172만 명 + 170만 명)가 경제활동인구(2,317만 명)보다 많은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일부가 임의가입자나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가입자에 포함되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임

※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2020.09.09)

2. 종사상 지위¹²⁾별 사각지대 규모

- 2018년 현재 경제활동인구 중 약 27%는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모두 90% 후반의 연금가입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는 정규직 근로자는 연금가입률이 53.8%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42.8%만 국민연금을 가입되어 있음
 -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률이 56.3%임

12)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구분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cv/svc/SvcMetaDownPreview.do>)(검색일: 2020.09.16.)

[표 1] 18~5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률(2018년)

(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계
	상용-정규	상용-비정규	임시일용-정규	임시일용-비정규	고용주	자영자	
2018	99.5	97.6	53.8	42.8	87.5	56.3	72.9

※ 자료: 류재린, 앞의 글, p.33. <표 1>에서 일부 발췌

3. 고용형태별 사각지대 규모

□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는 일일(호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가장 낮았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직군은 일일(호출)¹³⁾(34.5%), 시간제근로(41.1%), 가내근로(53.5%), 특수고용¹⁴⁾(57.2%) 순이었음
- 해당 직군 가입자 전원이 향후 연금수급자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일(호출) 근로자의 65.5%, 시간제근로자의 58.9%, 가내근로자의 46.5%, 그리고 특수고용근로자의 42.8%는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줌

[표 2] 근로자(20~59세)의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2018년)

(단위: %)

구분	비정규직							정규직		계
	일일(호출)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시간제	한시적	임시일용	상용	
전체	34.5	88.1	87.4	57.2	53.5	41.1	85.5	53.8	99.5	85.1

※ 자료: 류재린, 앞의 글, p. 37. <표 5>에서 일부 발췌

4. 가입종별 사각지대 규모

□ 가입종별 평균 가입기간을 살펴보면, 납부예외자로 전락한 지역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34개월로 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을 신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소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제도가입을 선택한 자이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임의가입을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소득으로 신청하다보니, 가입자가 저소득군에 몰려 있어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아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수 있음¹⁵⁾

13)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이 있음. 네이버사전 (<https://dict.naver.com>) (검색일:2020.09.16.)

14)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방법이나 근로 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스스로 고객을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조건으로 고용되는 형태.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 기사, 보험 설계사 등이 있음. 네이버사전 (<https://dict.naver.com>) (검색일: 2020.09.16.)

- 가장 문제는 소득과약이 안 되는 납부예외자임. 적용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단이 납부예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재개를 설득하고 유도할 때, 소득과약이 안되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¹⁶⁾¹⁷⁾ 이는 실제 소득과 가입소득 간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와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표 3| 가입종별 평균 가입기간(2020년 6월 말)

(단위: 개월)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임의가입자	계
전체 평균	134	114	41	101	117

※ 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납부이력이 있는 경우만 포함됨

※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2020.09.09.)에서 일부 발췌

5. 성별 사각지대 규모

□ 남성 사업장가입자 비율(68.3%)이 여성(61.3%)보다 높고, 남성 지역가입자 비율(31.2%)은 여성(35.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입종별 평균 가입기간(앞의 [표 3] 참고) 등을 보더라도 사업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연금 가입 이력 확보와 수급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¹⁸⁾ 성별에 따른 가입종별 차이가 적용과 급여의 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15)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별/소득구간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전체 임의가입자 32만 8,727명 중 100~110만 원 소득구간(총 46개 소득구간 중 8번째) 가입자가 20만 764명으로, 61%가 한 소득구간에 몰려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재분배기능으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당연 가입자인 사업장 가입자와 비교할 때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낮은 소득구간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만큼 수급액은 낮을 수밖에 없음

16)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④~⑧ 생략

17)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별/소득구간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전체 지역가입자 723만 2,063명 중 납부예외자 327만 6,660명을 제외한 395만 5,403명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100~110만 원 소득구간(총 46개 소득구간 중 8번째) 가입자가 81만 1,443명으로, 약 21%가 해당 소득구간에 몰려 있음. 낮은 소득구간으로 가입하면 재분배 기능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는 취약할 수 밖에 없음

18)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므로, 보험료 납입 시 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보다 더 민감하게 됨

표 4 | 성별·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인원	비율			
계	21,718,364	100.0	14,157,574	7,232,063	328,727
남자	12,044,246	55.5	8,228,605 (68.3%)	3,766,723 (31.2%)	48,918 (0.5%)
여자	9,674,118	44.5	5,928,969 (61.3%)	3,465,340 (35.8%)	279,809 (2.9%)

※ 주: 2019년 12월말 기준

※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관련통계」, 『연금포럼』 (봄호, Vol.77), 2020, p.101에서 발췌 및 재구성.

□ 노령연금 수급자수 중 성별 격차가 크게 드러남

- 우선,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는 20년 이상 가입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이 39만 3,385명(89.4%)이고 여성은 4만 6,594명(10.6%)에 불과함
 - 수급액을 구간별로 보더라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기간 동안 남성이 더 높은 소득구간에 속해있었음을 보여줌
- 가입기간 10~19년 동안 연금에 가입했던 여성 62만 2,351명 중에서 절대다수인 51만 74명(82.0%)은 40만 원 미만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연금에 가입한 남성 95만 8,631명 중 절반 이상인 51만 3,310명(53.5%)은 4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금수급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조기노령연금¹⁹⁾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이혼 후 받는 분할연금²⁰⁾은 수급자의 88.6%가 여성인데, 연금 수급액의 90% 이상이 4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였던 기혼여성의 취약한 노후준비 상황을 시사하고 있음

19)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며, 최장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생략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20)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④ 생략

|표 5| 성별·수급액별 노령연금 수급자수

(단위: 명)

구분	가입기간 20년 이상		가입기간 10~19년		조기노령		특례		분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393,385	46,594	958,631	622,351	434,781	186,461	856,729	499,868	3,940	30,744
20만 원 미만	27	6	4,649	42,125	4,327	14,457	393,911	374,794	3,507	18,226
20~40만 원 미만	221	671	440,672	467,949	115,015	121,119	372,850	120,074	400	9,518
40~60만 원 미만	43,142	20,252	334,636	100,740	109,698	38,082	67,711	4,590	31	2,579
60~80만 원 미만	87,684	16,566	116,626	9,685	77,889	8,396	16,895	51	2	388
80~100만 원 미만	90,249	5,181	42,631	1,590	60,827	2,698	5,310	359	0	20
100~130만 원 미만	106,651	2,947	19,043	254	52,292	1,479	52	0	0	12
130~160만 원 미만	56,522	884	366	8	14,466	227	0	0	0	1
160~200만 원 미만	8,793	85	8	0	267	3	0	0	0	0
200만 원 이상	96	2	0	0	0	0	0	0	0	0

※ 주: 2019년 12월 말 당월기준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2019.12월 말 기준)」, pp.15~16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https://www.nps.or.kr>)

Ⅲ.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 그동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로는 (1) 연금제도의 적용대상(특히 사업장가입자)을 확대하는 방안, (2) 출산·군복무·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가입기간 추가산입제도 도입, 그리고 (3)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등이 있었음²¹⁾
- 사업장가입자의 적용대상 확대²²⁾
 - 1988년 1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한 후, 1992년 1월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까지, 1995년 8월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까지, 2003년 7월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인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까지, 그리고 2006년 1월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가 완료됨
 - 1988년에는 일용·임시직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만 가입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1개월 이상 고용되는 모든 일용·임시직 근로자로 확대됨
 - 2003년에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 적용대상에 포함시켰고, 2010년부터는 시간제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기준을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장 가입자를 확대함
 - 2018년부터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됨
- 가입기간 추가산입제도(크레딧 제도)의 도입
 - 군복무크레딧(「국민연금법」 제18조): 2008년 도입
 - 병역의무를 수행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항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임
 - 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이 해당되고, 직역연금가입자는 제외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
 - 출산크레딧(「국민연금법」 제19조): 2008년 도입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항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임

21) 이용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연금포럼』 (봄호, Vol.77), 국민연금연구원, 2020, p.1.

22) 사업장가입자의 확대는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를 제도 내로 편입시키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를 소득신고자로 전환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이용하, 같은 글, 2020, p. 2.

- 2008년부터 적용되며,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자녀 출산 이후부터 1명 당 18개월씩 추가하되 최대 50개월까지 가능함
-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 실업크레딧(「국민연금법」 제19조의2): 2016년 도입
 -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재산 또는 소득이 일정 기준²³⁾ 이하인 사람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되,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한 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25%), 국민연금기금(25%), 고용보험기금(25%)이 함께 부담함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제도

- 1995년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제1항)
 - 1천 m²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경우, 농·어업 경영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 중 90(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 지원 대상임
 - 단,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²⁴⁾
 - 농·어민의 월 소득이 97만 원 이상(월 보험료 8만 7,300원 이상)인 경우는 4만 3,650원 정액 지원하며, 월 소득이 97만 원 미만(월 보험료 8만 7,300원 미만)인 경우는 보험료의 1/2 만큼 정률 지원함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²⁵⁾(「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 2020년 1월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규지원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90%까지/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받고, 기존 지원자는 지원 종료시까지 30%를 지원받게 됨
 - 단,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9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에 따르면, 재산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소득기준은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 원임

24) 2020년 7월 1일 기준

25) 2012년 7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2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50% 차등지원으로 시 작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검색일: 2020.08.30.)

IV.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입법화 동향

- 결국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어떻게 공적연금제도 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중에 납부예외자 또는 장기체납자가 된 사례를 어떻게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줄여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 할 것임
- 제20대국회와 제21대국회에 발의된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관련 입법화 동향을 주제(가입자 확대, 가입기간 추가산입, 보험료 지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6] ~ [표 8]과 같음²⁶⁾
 - 가입자 확대방안은 대체로 사업장가입자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나 임의가입을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음

[표 6] 제20대 및 제21대국회의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입법화 동향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 내용
오제세 의원 (2017.02.27.)	-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안 제126조제2항 및 제5항제4호 신설)
조경태 의원 (2017.03.21.)	-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함 (안 제3조의2 신설)
강병원 의원 (2017.03.31.)	-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간·단시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 및 노후소득의 안정에 기여함 (안 제3조제1항제1호)
이명수 의원 (2019.09.02.)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장가입자가 부담금을 포함하여 체납된 연금보험료 전체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7조) - 기본연금액의 계산에 있어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전체를 납부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51조) - 지역가입자의 경우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92조제1항제4호)
이명수 의원 (2020.01.2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의2) -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여성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정춘숙의원 (2020.06.26.)	-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2020년 7월 기준 32만 원, 월 보험료 2만 8,800원)으로 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최종 검색일: 2020.09.21)

26) [표 6]~[표 8]에서 제시한 제20대국회 시기에 발의된 법률안은 임기만으로 폐기됨. 그러나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함께 살펴보기로 함. 동일한 의원이 제20대국회와 제21대국회에 연속 발의한 경우는 제21대국회 발의안만 포함함

- 가입기간 추가산입 방안에서 출산크레딧은 그 적용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군복무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군복무기간 전체로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표기 제20대 및 제21대국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입법화 동향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 내용
박광온 의원 (2016.07.08.)	-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자녀 당 36개월로 연장하며, 추가 산입기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박광온 의원 (2016.07.11.)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함 - 추가 산입기간의 인정소득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수행에 따른 개인의 손실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을 강화함 (안 제18조제1항 및 안 제51조제1항제2호가목)
김삼화 의원 (2016.09.30.)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를 얻은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사전에 국고에서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등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고 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안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최도자 의원 (2017.04.14.)	- 재산 또는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3제1항 신설) - 추가 산입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자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제3항 신설)
손금주 의원 (2018.01.29.)	-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이행한 국민 모두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박덕흠 의원 (2018.09.28.)	-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추가 가입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안 제19조)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가 아닌 출산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되 매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2호나목)
김광수 의원 (2018.11.19.)	- 현재 2명 이상의 자녀부터 산입되고 있던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부터 확대하도록 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함(안 제19조)
남인순 의원 (2020.07.02.)	- 기존에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추가산입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여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한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제도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
정청래 의원 (2020.07.17.)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이행한 국민 모두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김성주 의원 (2020.07.20.)	-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이달곤 의원 (2020.09.01.)	-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모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18조제1항)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최종 검색일: 2020.09.21)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은 연금 가입의 초기단계인 청년과 마지막 단계인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

표 8 | 제20대 및 제21대국회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입법화 동향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 내용
남인순 의원 (2016.08.10.)	-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 국가는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3항 신설)
윤소하 의원 (2017.06.19.)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중 사업장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함(안 제100조의3제1항)
강창일 의원 (2019.05.08.)	-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8조제4항 단서 신설)
윤후덕 의원 (2019.10.31.)	- 만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을 계속 부담하도록 함(안 제88조) -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3)
권철승 의원 (2020.06.10.)	- 국가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청년창업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관리에도 기여함(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 제123조제1항 전단)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최종 검색일: 2020.09.21)

V. 나가며

-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해 온 그동안의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연금 가입이력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임
- 공적연금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개별상황에 맞게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연금이력을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18세~55세²⁷⁾ 연령군을 대상으로 한 사각지대 축소 노력은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존에 사업장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던 근로자들을 제도의 적용범위로 포함시키고, 군복무나 자녀의 출산 또는 양육 등으로 인해 연금가입 이력을 지속시키지 못했던 경우는 가입이력으로 합산하여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측면을 강조하다보면 또 다른 핵심적 가치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개혁적 조치가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컨대, 낮은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각지대의 규모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또한 소득대체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나,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연금재정의 고갈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
 - 따라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이라는 두 원칙을 지켜나가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이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를 함께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제도의 개선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입자 차원에서 가입이력을 지속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함

27) 55세인 자가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참고문헌

-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2019.12월 말 기준)」 (<https://www.nps.or.kr>)
-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2020.09.09)
-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관련통계」, 『연금포럼』 (봄호, Vol.77), 2020.
- * 국회예산정책처, 「2020 경제·재정수첩」, 2020.
-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 * 류재린,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와 지역가입자의 관리강화 및 지원 필요성」, 『연금 포럼』 봄호 Vol.77, 국민연금연구원, 2020,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9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 * 이용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연금포럼』 (봄호, Vol.77), 국민연금연구원, 2020.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162호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법제화에 대한 검토	2020.9.7.	최진응
제161호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2020.9.4	전윤정
제160호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해외의 출국금지 및 신상공개 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2020.8.21.	허민숙
제159호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	2020.8.5.	조인식
제158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현황 및 과제	2020.7.28.	한인상
제157호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	2020.7.27.	김진선
제156호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2020.7.22.	구세주
제155호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2020.7.14.	류영아
제154호	안전체험관 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2020.7.7.	배재현
제153호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2020.7.3.	유제범
제152호	해외 주요국 공휴일 제도와 국내 공휴일 법제화 논의	2020.6.30.	이송림
제15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020.6.22.	허민숙
제150호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재발 현황과 과제	2020.6.18.	정영주
제149호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2020.6.18.	최미경
제148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2020.6.16.	하혜영
제147호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2020.6.16.	조인식
제146호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2020.6.16.	박혜림
제145호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2020.6.9.	형혁규
제144호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2020.6.4.	김여라
제143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2020.6.4.	박준환
제142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및 향후 과제	2020.6.3.	조서연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141호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과제	2020.5.30.	김진수
제140호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5.30.	유재국
제139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2020.5.30.	문은희
제138호	금융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금융 혁신의 동향과 향후과제	2020.5.30.	조영은
제137호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2020.5.29.	노성준
제136호	보험설계사의 고지(告知)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20.5.27.	김창호
제135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2020.5.19.	최병근
제134호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2020.5.4.	허민숙
제133호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2020.4.28.	김예성
제132호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	2020.4.7.	정준화
제131호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2020.4.3.	최미경
제130호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2020.4.2.	박진우
제129호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4.1.	김경민
제128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공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2020.3.30.	조규범 이재영 배정훈
제127호	적합성평가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0.3.30.	김종규
제126호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3.25.	장영주
제125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	2020.3.23.	임언선
제124호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2020.3.18.	황현영
제123호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2020.3.9.	이만우
제122호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	2020.3.5.	허민숙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121호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2020.3.3.	허민숙
제120호	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2020.3.2.	이덕난
제119호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	2020.2.24.	김선화
제118호	수산부산물(水産副産物)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20.2.20.	유제범 김경민
제117호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2020.2.12.	최미경
제116호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2020.2.6.	형혁규
제115호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2020.1.23.	이정진 김종갑
제114호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과 개정의 필요성	2020.1.22.	정민정
제113호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2020.1.17.	백상준
제11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2020.1.15.	권성훈
제111호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분석 및 개선과제	2019.12.31.	김도희
제110호	한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관행의 특수성과 개선방향	2019.12.31.	정민정
제109호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	2019.12.31.	구세주
제108호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2019.12.31.	김주경 정준화
제107호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2019.12.31.	황현영
제106호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2019.12.31.	문은희
제105호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2019.12.31.	김예경
제104호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	2019.12.31.	조인식
제103호	우리나라 경제특구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2019.12.31.	김민창
제102호	사법행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2019.12.31.	백상준
제101호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	2019.12.31.	김재환
제100호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 통치관료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2019.12.31.	이승열

제163호

NARS

현안분석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